

## 우리나라의 건설중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채 완 병 \*\*

〈 목 차 〉

- I. 서 론
- II. 우리나라의 건설중재 현황
- III. 건설중재 활성화 방안
- IV. 결 론

---

\* 이 논문은 2004. 6. 25. “건설중재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중재학회가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한중재인협회와 공동 주최한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논문임.

\*\*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장

## I.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증가와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 법원의 소송제도를 보완·대체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도 점증하고 있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신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도 다양한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소송절차에 의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인 재판절차에 대체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전통적 수단의 강제적 의미에 대체하여 비소송적,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의미한다. ADR은 알선, 조정, 중재, 조정·중재(Med-Arb), 간이심리(Mini-Trial), Partnering(협력), DRB(Dispute Resolution Board; 분쟁해결위원회)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각종 분쟁의 해결에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알선, 조정, 중재 등이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다른 ADR제도와는 달리 중재판정에는 확정판결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재가 최초로 법의 보호아래 제도화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1조 13호에 따라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된 때 부터로 이 조선민사령은 8·15 해방 후에는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한번도 중재가 이용된 사례가 없었고 1960년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중재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1966년에 중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중재에 관한 법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한편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외국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분쟁을 원

만하게 해결하면서 국내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중재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재법의 제정과 상사중재위원회의 설립에 착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중재법<sup>1)</sup>이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제정·공포되고 같은 해 3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설치되고 같은 해 10월 13일 상사중재규칙<sup>2)</sup>이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제정, 운용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분쟁해결제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였다<sup>3)</sup>. 그 후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1970년 3월 22일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되고 1980년 8월 29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되어 명실공히 상사중재업무를 처리하는 국내유일의 법정상설중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중재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고 중재제도가 분쟁해결제도로 기능을 시작한지 38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인 문제점 등으로 중재를 이용한 분쟁의 해결이 보편화 되지 못하고 특히 IMF 사태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건설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이 건설중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점 등으로 최근에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처리된 건설중재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설중재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중재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설분쟁의 해결제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1) 중재법은 그 후 1999. 12. 31. UNCITRAL Model Law를 전면 수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 2) 상사중재규칙은 2000. 4. 27. 7차 개정에서 중재규칙으로 명칭이 변경됨.
  - 3) “상사중재 3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1996. pp.39-41 내용중 발췌.

## II. 우리나라의 건설중재 현황

### 1. 건설중재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

#### 1) 건설중재사건의 급격한 증가와 증가율 감소추세

건설중재는 건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클레임이나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중재사건은 건설시장이 개방되고 IMF사태가 발생한 1997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03년에는 전체 중재사건의 33.6%에 달하는 71건이 접수되어 매년 5-10건 정도가 접수되던 IMF이전에 비하여 건설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중재사건의 증가율은 조사기관중 년평균 2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그 증가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지난 2003년도에는 7.6%의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중재사건의 증가율 감소 영향과 함께 건설계약에 주로 이용되는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1> 건설중재사건의 년도별 접수현황

(단위: 건수,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중재사건	175	4,502	197	3,155	210	3,106	211	2,662
건설 중재사건	45	3,544	57	1,821	66	1,394	71	675
건설사건 비중	25.7	78.7	28.9	57.7	31.4	44.9	33.6	25.4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표 1-2> 건설중재사건 증가율 현황

(단위: 건수,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년평균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건수	증가율	
전체 중재사건	175	16.7	197	12.6	210	6.6	211	0.5	9.0
건설 중재사건	45	45.2	57	26.7	66	15.8	71	7.6	23.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2) 공공건설에서 민간건설로의 중재이용

<표 2> 공공·민간건설 중재사건 접수현황

(단위: 건수,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공공 건설사건	30 (66.7)	3,451 (97.4)	45 (78.9)	1,797 (98.7)	34 (51.5)	1,266 (90.8)	33 (46.5)	497 (73.6)	142 (59.4)	7,011 (94.3)
민간 건설사건	15 (33.3)	93 (2.6)	12 (21.1)	24 (1.3)	32 (48.5)	128 (9.2)	38 (53.5)	178 (26.4)	97 (40.6)	423 (5.7)
계	45 (100.0)	3,544 (100.0)	57 (100.0)	1,821 (100.0)	66 (100.0)	1,394 (100.0)	71 (100.0)	675 (100.0)	239 (100.0)	7,434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구성비임.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중재사건을 공공건설 중재사건<sup>4)</sup>과 민간건설 중재사건으로 분류하여 보면 그동안 건설중재제도는 공공건설

4) 건설중재사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 건설중재사건을 공공건설 중재사건으로 분류함.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재제도의 이용이 민간건설계약의 분쟁해결수단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특히 1999년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서울지하철건설공사,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경부고속철도건설공사, 월드컵경기장건설공사 등 대형 공공건설 계약과 관련된 공공건설 중재사건이 1999년도부터 2002년도에 걸쳐 주로 접수되면서 2001년의 경우 전체 건설중재사건 중 공공건설 중재사건이 78.9%에 이르고 분쟁금액도 98.7%로 건설중재사건의 대부분을 공공건설 중재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을 정점으로 전체 건설중재사건 중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2002년에는 51.5%를 차지하고 2003년에는 46.5%로, 2003년도에는 민간건설 중재사건이 공공건설 중재사건보다 오히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비중이 공공건설 중재사건보다 높게 나타난 현상은 중재를 이용한 건설분쟁의 해결이 공공건설 사건에서 민간건설사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한편으로 위에서 열거한 공공건설공사 발주이후 대형 공공건설공사의 발주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영향과 함께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sup>5)</sup>에 대한 중재합의 부존재 논란과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이 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중재법에 '중재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고(중재법 제3조 제1호),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의 분쟁을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전속적 중재합의라 하고 소송의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중재 또는 조정, 중재 또는 소송 등과 같이 중재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중재합의조항을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이라고 한다.

### 3) 고액의 건설중재사건

건설중재사건의 분쟁금액은 대부분 고액사건으로 특히 공공건설 중재사건은 조사기간 4년 평균의 건당 분쟁금액이 49.4억원이었고 특히 대형 공공건설사건이 집중되었던 2000년도의 경우 건당 분쟁금액이 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또한 분쟁금액 규모별로는 공공건설사건의 경우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사건이 전체의 24.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2000년도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7건으로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23.3%를 차지하였으며, 그중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2건이 있었다.

한편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1억원 이하의 사건으로 조사기간중 전체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47.4%가 1억원 이하의 사건이었으나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조사기간 중 2건이 있었다<표 3-1>.

<표 3-1> 건설중재사건의 분쟁금액 규모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1억원이하	-	6	6	9	9	14	10	17	25(17.6)	46(47.4)
1억초과-5억이하	4	5	13	1	5	14	8	11	30(21.1)	31(32.0)
5억초과-10억이하	1	3	2	2	6	3	6	3	15(10.6)	11(11.3)
10억초과-50억이하	10	-	14	-	5	-	5	7	34(24.0)	7 (7.2)
50억초과-100억이하	8	1	5	-	6	1	3	-	22(15.5)	2 (2.1)
100억초과-200억이하	5	-	3	-	1	-	1	-	10 (7.0)	-
200억초과-500억이하	-	-	2	-	2	-	-	-	4 (2.8)	-
500억원초과	2	-	-	-	-	-	-	-	2 (1.4)	-
계	30	15	45	12	34	32	33	38	142(100)	97(1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구성비임.

&lt;표 3-2&gt; 건설중재사건의 건당 분쟁금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4년평균
공공건설 중재사건	115.0	39.9	37.2	15.1	49.4
민간건설 중재사건	6.2	2.0	4.0	4.7	4.4
계	78.8	31.9	21.1	9.5	31.1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4) 추가공사비, 공사비청구 위주의 청구원인

<표 4>에 의하면, 건설중재사건에서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대부분 추가공사비<sup>6)</sup>와 공사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 평균 65.5%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감액공사비 반환청구<sup>7)</sup>와 공사·용역대금청구<sup>8)</sup> 사건이 각 11.3%, 9.2%를 차지하였고, 민간건설 중재사건에서는 전체사건의 37.1%가 공사·용역대금을 청구하고 뒤이어 35.1%가 추가공사비, 16.5%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공공건설사건 보다 민간건설 중재사건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하자, 공사지연, 시설불량, 계약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 
- 6) 건설중재사건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주로 공기연장, 운반거리변경 등에 따른 추가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청구되었는데 이를 일괄하여 추가공사비 청구사건으로 분류함.
- 7) 감액공사비 반환청구 사건은 이미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거나 기성으로 지급된 공사비에 대하여 발주자의 내부자체감사 또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발주자가 감액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 임.
- 8) 공사·용역대금청구에는 공사 및 용역잔대금청구, 기성금청구, 공사타절에 따른 공사비청구 등의 사건이 포함됨.

<표 4> 건설중재사건의 청구원인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추가공사비	22	8	26	4	24	12	21	10	93(65.5)	34(35.1)
공사·용역(잔)대금	3	5	3	5	2	10	5	16	13 (9.2)	36(37.1)
감액공사비 반환	1	-	10	-	5	-	-	-	16(11.3)	-
지체상금 반환	-	-	4	-	2	-	5	-	11 (7.7)	-
손해배상	2	1	2	2	1	3	2	10	7 (4.9)	16(16.5)
채무부존재 확인 (하자보수,계약이행보증)	2	-	-	-	-	3	-	1	2 (1.4)	4 (4.1)
착수금, 보증금 반환	-	-	-	1	-	2	-	-	-	3 (3.1)
기 타	-	1	-	-	-	2	-	1	-	4 (4.1)
계	30	15	45	12	34	32	33	38	142(100)	97(1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5) 시공사 위주 신청의 건설중재사건

건설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전체 건설중재사건의 93.3%가 시공사로, 공공건설 중재사건은 97.2%, 민간 건설 중재사건은 87.6%가 시공사가 중재를 신청하였다<표 5>.

조사기간 중 발주자가 중재를 신청한 공공건설 중재사건은 4건으로 공공건설 중재사건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았으며 청구원인은 하자,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이었다.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공공건설 중재사건보다 다소 많은 12.4%의 사건이 발주자가 신청한 중재사건이었는데 청구원인은 공공건설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으로 하자, 시설불량,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이었고 공공, 민간건설 중재사건 모두 신청인의 공사비 청구 등에 대한 반대신청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lt;표 5&gt; 건설중재사건의 신청인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공공 건설	발주자	2	6.7	1	2.2	1	2.9	-	-	4	2.8
	시공자	28	93.3	44	97.8	33	97.1	33	100.0	138	97.2
	소계	30	100.0	45	100.0	34	100.0	33	100.0	142	100.0
민간 건설	발주자	1	6.7	2	16.7	3	9.4	6	15.8	12	12.4
	시공자	14	93.3	10	83.3	29	90.6	32	84.2	85	87.6
	소계	15	100.0	12	100.0	32	100.0	38	100.0	97	100.0
계	발주자	3	6.7	3	5.3	4	6.1	6	8.5	16	6.7
	시공자	42	93.3	54	94.7	62	93.9	65	91.5	223	93.3
	계	45	100.0	57	100.0	66	100.0	71	100.0	239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이와 같이 시공자가 건설중재를 신청하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건설계약의 특성상 발주자는 대체로 클레임 제기사유가 없으며, 법원의 소송절차는 건설공사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공평타당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아니라<sup>9)</sup> 소송절차의 분쟁처리 지연에 따른 시공자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시공자는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6) 선택적 중재합의 조항의 건설공사계약 분쟁해결조항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중재사건의 분쟁해결조항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공공건설 계약의 계약문서에 포함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이 90.9%를 차지하여 기타의 분쟁해결조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

9) 문장록, “중재판정의 집행력에 대하여”, 「2004년도 제2차 건설중재인포럼」 대한상사중재원, 2004. 5. 28, p.15.

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중재조항<sup>10)</sup>이나 임의중재조항<sup>11)</sup>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각 6.3%와 2.8%로 조사되었는데 계약체결시 이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보다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채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경우에는 표준중재조항을 분쟁해결조항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임의중재조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분쟁해결조항 순이었고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8.2%를 차지하였다.

<표 6> 건설중재사건의 분쟁해결조항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공공 건설	공사계약일반조건	24	80.0	43	95.6	32	94.1	30	90.9	129	90.9
	표준중재조항	5	16.7	2	4.4	-	-	2	6.1	9	6.3
	임의중재조항	1	3.3	-	-	2	5.9	1	3.0	4	2.8
	계	30	100.0	45	100.0	34	100.0	33	100.0	142	100.0
민간 건설	표준중재조항	7	46.7	6	50.0	14	43.8	19	50.0	46	47.4
	임의중재조항	5	33.3	1	8.3	2	6.2	7	18.4	15	15.5
	공사계약일반조건	1	6.7	1	8.3	2	6.2	4	10.5	8	8.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2	13.3	2	16.7	10	31.3	5	13.2	19	19.6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	2	16.7	4	12.5	3	7.9	9	9.3
계	15	100.0	12	100.0	32	100.0	38	100.0	97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10) 대한상사중재원이 권장하는 표준중재조항으로 국내거래의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임.
- 11) 임의중재조항은 계약당사자들이 임의로 약정한 중재조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과 같이 정형화된 계약문서에 포함된 중재조항도 아니고 표준중재조항도 아닌 형태의 중재조항을 말함.

건설계약은 부합계약 성격으로 발주자가 미리 작성하여 인쇄된 계약문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 계약에는 통상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민간건설 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용을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가 이용되는데 이들 계약문서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은 모두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 또는 중재, 중재 또는 소송 등과 같이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8조에서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상의 분쟁해결조항이 계약문서에 편입되면 이는 일단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계약문서의 분쟁해결조항인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대하여 중재합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바로 이점이 건설중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택적 중재합의조항과 이 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고자 한다.

#### 7) 건설중재사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256일

조사기간 중 접수된 건설중재사건 239건(공공건설사건 142건, 민간건설사건 97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20건을 제외한 219건이 처리되었는데 전체 건설사건의 75.7%인 181건이 판정처리 되었고 15.9%에 해당하는 38건이 중재절차 중에 철회되었다.

판정처리된 181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20건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당사자의 화해로 처리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민간건설사건으로,

판정처리된 민간건설사건 69건 중 20.3%인 14건이 화해판정으로 처리되어 공공건설사건의 5.4%에 비하여 화해로 처리된 사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7-1>.

<표 7-1> 건설중재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공공 건설 사건	중재판정	21(2)	70.0	43(2)	95.6	27(1)	79.4	21(1)	63.6	112(6)	78.9
	철회	9	30.0	2	4.4	5	14.7	4	12.1	20	14.1
	진행중	-	-	-	-	2	5.9	8	24.3	10	7.0
	소계	30	100.0	45	100.0	34	100.0	33	100.0	142	100.0
민간 건설 사건	중재판정	11(3)	73.3	10(1)	83.3	26(6)	81.3	22(4)	57.9	69(14)	71.1
	철회	3	20.0	2	16.7	6	18.7	7	18.4	18	18.6
	진행중	1	6.7	-	-	-	-	9	23.8	10	10.3
	소계	15	100.0	12	100.0	32	100.0	38	100.0	97	100.0
계	중재판정	32(5)	71.1	53(3)	93.0	53(7)	80.3	43(5)	60.6	181(20)	75.7
	철회	12	26.7	4	7.0	11	16.7	11	15.5	38	15.9
	진행중	1	2.2	-	-	2	3.0	17	23.9	20	8.4
	소계	45	100.0	57	100.0	66	100.0	71	100.0	239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화해판정사건임.

한편, <표 7-2>에 의하면 철회 및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판정으로 처리된 181건의 건당 평균처리기간은 255.6일이 소요되었고 평균 심리회수는 4.1회로 조사되었는데 평균 처리기간과 심리회수가 점점 줄어들어 건설분쟁의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건설사건은 평균 처리기간이 285.8일로 민간건설사건의 206.5일에 비하여 건당 평균처리기간이 79.3일 더 소요되었는데 이는 공공건설사건이 민간건설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하고 분쟁금액이 고액이어서 쟁점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처리기간이 더 소요된 것으로

로 추정되나 공공건설사건의 분쟁해결조항인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대한 중재합의 부존재 항변으로 심리가 공전된 것도 공공건설 중재사건의 처리기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 건당 평균 처리기간 및 심리회수 현황

(단위: 일, 회,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처리 기간	심리 회수								
공공건설사건	351.1	5.9	319.7	4.4	254.9	3.9	190.6	3.4	285.8	4.4
민간건설사건	307.9	5.5	165.2	3.0	229.3	3.8	147.8	2.8	206.5	3.6
계	336.3	5.8	290.6	4.1	242.3	3.8	168.7	3.1	255.6	4.1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8) 50%이내의 중재판정율(승소율)

<표 8>에서 보는 것 처럼 건설중재사건의 승소율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각하나 기각 판정되어 신청인이 완전 패소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의 경우 19.7%, 민간건설사건의 경우 22.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인의 중재신청이 50%이내의 승소율로 판정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이 65.1%, 민간건설사건이 73.5%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재신청이 완전 승소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이 11.6%, 민간건설사건이 1.5%로 공공건설사건의 승소율이 높게 나온 반면 신청금액의 50%초과 99%까지의 범위로 판정된 경우는 공공건설사건이 23.3%, 민간건설사건이 25.0%로 공공건설사건보다 민간건설사건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율(승소율)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0%(각하,기각)	4	2	9	2	7	6	2	5	22(19.7)	15(22.0)
1-10% 승소	3	-	4	1	1	3	2	1	10 (8.9)	5 (7.4)
11-20 "	2	-	3	-	1	-	2	3	8 (7.1)	3 (4.4)
21-30 "	3	-	2	3	2	1	2	2	9 (8.0)	6 (8.8)
31-40 "	3	4	6	1	2	4	1	2	12(10.7)	11(16.2)
41-50 "	2	2	1	1	5	4	4	3	12(10.7)	10(14.7)
51-60 "	-	1	2	-	1	1	4	3	7 (6.3)	5 (7.4)
61-70 "	1	-	5	-	2	4	2	1	10(8.9)	5 (7.4)
71-80 "	-	1	3	1	1	-	1	1	5 (4.5)	3 (4.4)
81-90 "	-	1	1	-	-	-	-	1	1 (0.9)	2 (2.9)
91-99 "	-	-	2	-	1	2	-	-	3 (2.7)	2 (2.9)
100 "	3	-	5	1	4	-	1	-	13(11.6)	1 (1.5)
계	21	11	43	10	27	25	21	22	112 (100.0)	68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1. ( )안은 구성비임.

2. 2002년 민간건설사건 중 청구금액없는 사건으로 승소율을 정하기 곤란한 사건 1건은 제외함.

3. 중재판정율(승소율)은 신청금액 대비 판정금액의 비율로 판정금액/신청금액 × 100%로 구함.

## 2. 중재판정의 이행실태

대한상사중재원은 2003년도에 처리된 중재사건 249건 가운데 기각, 각하판정 사건 27건과 철회, 절차불이행<sup>12)</sup>사건 47건을 제외한 175건

12)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중재절차가 개시되는데 중재신청서만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종결처리되

에 대하여 전화조사 방법으로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중 건설중재사건은 66건으로 공공건설사건 31건, 민간건설사건 35건이 포함되었다<표 9>. 175건에 대한 판정이행 실태조사 결과 주소이전, 도산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9건을 제외한 166건의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9> 2003년도 중재사건 처리현황

(단위: 건)

구 분	판 정				철회	절차 불이행	계	
	인용	기각	각하	소계				
전 체 사 건	175	25	2	202	40	7	249	
건설사건	공공건설	31	6	-	37	12	-	49
	민간건설	35	1	-	36	5	1	42
	계	66	7	-	73	17	1	91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1) 중재판정 이행을 79.4% 건설중재사건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조사건수 63건중 50건이 자진이행<sup>13)</sup>하여 79.4%의 이행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중재판정 사건의 자진이행율 69.3% 보다 10.1% 높은 이행율이다. 한편, 건설중재사건의 경우 공공건설사건의 자진이행율이 80.0%로 민간건설사건의 78.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재판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사건이 공공건설사건에서 1건, 민간건설사건에서 5건으로 건설중재사건 전체의 9.5%를 차지하였고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진행중인 사건

는 사건을 절차불이행 사건으로 분류함.

13) 자진이행에는 합의이행 사건도 포함되었는데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 내지 양해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판정금액을 감액하여 이행한 합의이행 사건은 자진이행 사건으로 분류함.

이 5건, 중재판정을 이행한 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 2건으로 중재판정 취소관련 사건은 공공건설사건 5건, 민간건설사건 2건 등 모두 7건으로 건설중재 사건중 11.1%로 조사되었다.

<표 10> 중재판정 이행현황

(단위: 건, %)

구 분	전체 사건	구성비	건 설 사 건					
			공공	구성비	민간	구성비	계	구성비
자진이행	115	69.3	24	80.0	26	78.8	50	79.4
강제집행	9	5.4	-	-	-	-	-	-
강제집행진행중	10	6.0	1	3.3	4	12.1	5	7.9
강제집행준비중	5	3.0	-	-	1	3.0	1	1.6
이행중용중	13	7.9	-	-	-	-	-	-
판정취소의 소 진행중	9	5.4	3	10.0	2	6.1	5	7.9
이행후취소의 소 제기	2	1.2	2	6.7	-	-	2	3.2
포기	2	1.2	-	-	-	-	-	-
부가세관련별도소송	1	0.6	-	-	-	-	-	-
계	166	100.0	30	100.0	33	100.0	63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조사대상 : 전체사건중 조사불능 9건, 공공건설 1건, 민간건설 2건 제외.

## 2)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사유

<표 11>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기사유 현황

(단위: 건, %)

취소의 소 제기사유	건수	구성비	비고
중재합의 부존재	5	71.4	공공건설 5건
부당판정(금액불인정)	2	28.6	민간건설 2건
계	7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표 11>에 의하면, 조사결과 건설중재사건의 중재판정 취소관련 사건 7건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기사유는 공공건설사건 5건이 모두 중재합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되었고 민간건설사건 2건은 부당한 판정을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중재사건 당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2003. 3. 1부터 중재사건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 전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재절차 개선 등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사자 및 중재합의,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부, 중재원 사무국에 대한 것으로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설문문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어 여기에는 2003. 3. 1부터 12. 31까지 실시한 중재당사자의 설문조사결과 중 주요부분을 발췌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설문조사는 매 중재사건의 중재절차가 종결된 후 중재판정문을 송달하면서(또는 송달한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심리과정에 참여하였던 중재사건의 담당자들에게 설문지를 우송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중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78명이었고 그 중 설문에 응한 당사자는 49명으로 회수율은 17.6%에 그쳤다. 설문에 응답한 숫자가 적어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중재사건 당사자들의 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추세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응답한 당사자들의 중재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1) 중재사건에서의 역할

이번 중재사건에서 귀사(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다? 라고 묻은 항목에 신청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5명(51.0%), 피신청인이라고 응

답한 사람이 24명(49.0%)이었으며 건설중재사건의 경우 민간건설사건에서 8명, 공공건설사건에서 13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신청인 10명, 피신청인 11명 등 2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재조항을 삽입하겠습니까?

(단위: 명)

구분	전체사건			공공건설사건			민간건설사건			건설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삽입하겠다	22	15	37 (75.5)	7	2	9 (69.2)	2	3	5 (62.5)	14 (66.7)
삽입하지 않겠다	2	6	8 (16.3)	-	2	2 (15.4)	1	1	2 (25.0)	4 (19.0)
잘 모르겠다	1	3	4 (8.2)	-	2	2 (15.4)	-	1	1 (12.5)	3 (14.3)
계	25	24	49 (100.0)	7	6	13 (100.0)	3	5	8 (100.0)	21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구성비임.

향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재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응답은 전체사건 당사자의 75.5%, 건설사건 당사자의 66.7%로 대체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호하였고, 전체사건, 건설사건 공히 신청인의 중재선호도가 피신청인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공공건설사건에서 응답한 신청인은 모두가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선호한 반면에 공공건설사건의 피신청인은 대체로 중재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 발주기관에 대한 중재제도의 홍보 및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당사자중 50%가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25%는 단심제

의 위험성을, 나머지 25%는 형평에 의한 판정 가능성을 그 이유로 제시하여 모두가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관련된 응답이었다.

중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분쟁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재인의 부적격 고지, 중재인 취임수락제도 등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중재인이 분쟁사안에 대한 판단능력과 중재제도 및 기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위: 명)

구 분	전 체 사 건			공공건설사건			민간건설사건			건 설 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판정의 공정성을 신뢰할수 없어서	2	2	4 (50.0)	-	-	-	1	1	2 (100.0)	2 (50.0)
단심제의 위험성	-	2	2 (25.0)	-	-	-	-	-	-	-
형평에 의한 판정가능성	-	2	2 (25.0)	-	-	-	-	-	-	-
중재합의에 대한 우려	-	-	-	-	1	1 (50.0)	-	-	-	1 (25.0)
사후 이의제기에 따른시간 인력소모	-	-	-	-	1	1 (50.0)	-	-	-	1 (25.0)
계	2	6	8 (100.0)	-	2	2 (100.0)	1	1	2 (100.0)	4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구성비임.

#### 4) 중재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까?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체사건에서 75.5%(매우 신속 12.2%, 대체로 신속 63.3%), 건설사건에서 71.4%(매우신속 9.5%, 대체로 신속 61.9%)가 신속하다고 응답하여 중재절차의 신속성에 대

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설문에 응한 공공건설사건의 피신청인들은 100%가 신속하다고 평가하였고 민간건설사건의 피신청인들도 응답자의 80.0%가 신속하다고 평가하여 건설사건의 발주자들은 시공자인 신청인들보다 중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중재절차가 지연되었다고 평가한 당사자는 전체사건의 응답자 중 12.3%로 피신청인보다는 신청인들이 훨씬 많았고 건설사건에서는 9.5%가 절차지연을 지적하였는데 모두 공공건설사건의 신청인들임에 비추어 보면 중재신청인들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응답한 당사자들은 절차지연의 책임으로 대부분 상대방 당사자를 들었다.

(단위: 명)

구 분	전 체 사 건			공공건설사건			민간건설사건			건 설 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매우 신속	2	4	6 (12.2)	-	-	-	1	1	2 (25.0)	2 (9.5)
대체로 신속	14	17	31 (63.3)	4	6	10 (76.9)	-	3	3 (37.5)	13 (61.9)
보통	4	2	6 (12.2)	1	-	1 (7.7)	2	1	3 (37.5)	4 (19.1)
대체로 지연	4	1	5 (10.2)	2	-	2 (15.4)	-	-	-	2 (9.5)
매우 지연	1	-	1 (2.1)	-	-	-	-	-	-	-
계	25	24	49 (100.0)	7	6	13 (100.0)	3	5	8 (100.0)	21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1. ( )안은 구성비임.

2. 절차지연책임: 전체사건- 상대방당사자 5건(83.3%), 중재판정부 1건(16.7).  
건설사건 - 상대방당사자, 중재판정부 각 1건.

5) 중재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습니까?

(단위: 명)

구 분	전 체 사 건			공공건설사건			민간건설사건			건 설 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매우 공정	7	7	14 (28.6)	-	1	1 (7.7)	1	1	2 (25.0)	3 (14.3)
대체로 공정	11	12	23 (46.9)	4	4	8 (61.5)	1	4	5 (62.5)	13 (61.9)
보통	4	4	8 (16.3)	2	1	3 (23.1)	-	-	-	3 (14.3)
대체로 불공정	2	-	2 (4.1)	1	-	1 (7.7)	1	-	1 (12.5)	2 (9.5)
매우 불공정	1	1	2 (4.1)	-	-	-	-	-	-	-
계	25	24	49 (100.0)	7	6	13 (100.0)	3	5	8 (100.0)	21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1. ( )안은 구성비임.

2. 불공정이유: 전체사건- 중재인의 내용파악 부족 3건(75%), 편파진행 1건(25%).  
건설사건 - 중재인의 내용파악 부족 2건(100%).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사건의 응답자중 75.5%(매우공정 28.6%, 대체로 공정 46.9%), 건설사건의 응답자중 76.2%(매우공정 14.3%, 대체로 공정 61.9%)가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건설사건의 경우 공공건설사건은 응답자의 69.2%, 민간건설사건은 87.5%가 공정했다고 응답하여 공공건설사건의 당사자들보다 민간건설사건의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건설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인측 응답자중 57.1%, 피신청인측 응답자중 83.3%가 중재절차가 공정했다고 평가하여 시공자보다는 발주기관인 피신청인측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훨씬 높게 평가하였고 민간건설의 경우에도 신청인(66.7%)보다는 피신청인(100.0%)이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시공자인 신청인들보다 발주자인 피신청인들이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게 평가하여, 설문에 응답한 공공건설사건의 발주자들은 100%가 중재절차가 신속하며 83.3%가 공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향후 계약 체결시 응답자의 33.3%만이 중재조항을 삽입하겠다고 응답하여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재절차가 불공정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공정의 이유로 대부분 중재인의 내용파악 부족을 꼽았는데 일부 중재인들이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심리에 참여하여 심리를 잘못 진행한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불공정으로 비쳐진 것으로 보인다.

### 6) 중재판정에 만족하십니까?

(단위: 명)

구 분	전 체 사 건			공공건설사건			민간건설사건			건 설 계
	신청인	피신청인	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신청인	피신청인	소계	
매우 만족	5	5	10 (20.4)	1	1	2 (15.4)	-	1	1 (12.5)	3 (14.3)
대체로 만족	9	14	23 (46.9)	2	3	5 (38.5)	1	3	4 (50.0)	9 (42.9)
보통	5	4	9 (18.4)	2	2	4 (30.8)	1	-	1 (12.5)	5 (23.8)
대체로 불만족	4	-	4 (8.2)	2	-	2 (15.4)	1	1	2 (25.0)	4 (19.0)
매우 불만족	2	1	3 (6.1)	-	-	-	-	-	-	-
계	25	24	49 (100.0)	7	6	13 (100.0)	3	5	8 (100.0)	21 (100.0)

\* 출처 : 대한상사중재원.

\* ( )안은 구성비임.

중재판정에 대한 만족도는 건설사건의 경우 57.2%로 전체사건의 만족도 67.3%에 비하여 약 10%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건

설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의 만족도는 72.7%에 이르나 신청인들의 중재판정에 대한 만족도가 40.0%밖에 되지 않은데서 연유한 것이다. 또 건설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한 만족도는 민간건설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62.5%로 공공건설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 5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공자인 신청인들이 느끼는 중재판정에 대한 만족도는 공공건설사건에서 42.9%, 민간건설사건에서 33.3%인 반면 발주자인 피신청인들이 느끼는 중재판정의 만족도는 공공건설사건에서 66.7%, 민간건설사건에서 80.0%로 나타나 발주자들이 시공자들보다 중재판정에 훨씬 더 만족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중재사건의 발주자들은 시공자들보다도 중재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했다고 평가하였고 중재판정에 대하여도 더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들이 중재에 의한 건설분쟁의 해결을 기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재에 의하여 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중재를 통하여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결과에 만족한다면 건설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중재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재를 적극적으로 선호하여 건설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이다.

### Ⅲ. 건설중재 활성화 방안

#### 1.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 개선

##### 1) 선택적 중재조항의 이용현황 및 변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한 조항으로 분쟁해결조항을 두어 당해 공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 고시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도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을 기본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건설분쟁사건의 분쟁해결조항은 앞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건설 중재사건 142건중 90.9%에 해당하는 129건이 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체결되었고 민간건설 중재사건의 경우에도 97건중 37.1%인 36건이 공사계약일반조건이나 이와 유사한 민간건설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표준계약서로 체결되어 전체 건설중재사건의 69%가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체결되어 건설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은 계약상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으로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은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분쟁의 해결방법을 불분명하게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이 중재법상 유효한 중재합의인지의 여부에 대한 다툼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 12>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 변경내용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조항의 내용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1조(회계예규 2200.04-104-13; 1993. 5. 20)	① 당해계약문서와 예산회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51조(회계예규 2200.04-104-3; 1997. 1. 1)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호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51조(회계예규 2200.04-104-9; 2001. 2. 10)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51조(회계예규 2200.04-104-11; 2003. 12. 26)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28조 및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의 유·무효에 관한 판결이 엇갈리게 나왔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어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이 조항의 중재 합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으로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에도 중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중재의 장점인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훼손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에게 과중한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 낭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2) 선택적 중재조항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

그동안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는 견해와 유효라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체로 유효론이 우세하였다.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본 판결은 서울지법 2002.9.5. 선고 2000가합37949 판결,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1.11.16. 선고 2001가합6334 판결 등이 있는데 이들 판결의 요지는 모두 중재합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중재합의를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배척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는 계약” 등으로 해석하여 소위 전속적 중재합의만을 유효한 중재합의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선택적 중재합의를 유효한 중재합의로 판단한 판결도 많아서 서울지법 2002.2.5. 선고 2001가합54637 판결, 대구고법 2001.7.26. 선고 2000나7654 판결, 서울고법 2001.4.24. 선고 2000나51386 판결, 서울고법 2002.7.2. 선고 2002나6878 판결, 서울고법 2003.4.2. 선고 2002나16134 판결 등 선택적 중재합의가 중재합의로서 유효하다고 본 판결에서 법원은 “...(중재법에) 원고 주장과 같이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절차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담겨져 있는 분쟁해결조항은 중재법상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볼 수 있다”(서울고법 2002나6878)거나 “...중재를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의 한가지로 규정한 이상,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의만으로써 중재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이 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원·피고 일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서울지법 2001가합54637)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03. 8. 22.자로 대법원은 판결(2003다318)에서 분쟁은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중재조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선택적 중재조항은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를 선택하여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없이 중재절차에 임하였을 때 중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일방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합의의 부존재를 적극 주장하면서 중재에 의한 해결을 반대한 경우에는 중재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인 2004.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가합 49684 판결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회계예규 2200.04-104-3)에 대하여

“... 유효한 중재합의의 범위를 오로지 중재에 의해서만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의 경우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소송이외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신속한 분쟁 해결 내지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재와 조정 등의 다른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 역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선택적 중재합의가 중재계약으로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 3)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을 개선해야 할 이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건설계약에 이용되는 선택적 분쟁해결조항(중재조항)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분쟁당사자들간의 중재합의 유효성 다툼으로 건설중재사건은 대부분 중재절차가 지연되고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남발되는 등 중재제도의 장점인 신속성이 크게 훼손되고 분쟁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낭비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초래케 하여 중재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중재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낭비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와 혼선, 그리고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명료한 조항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원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라는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반대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당시 중재계약이 없더라도 사후 중재합의를 통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에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중재합의를 해야 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의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규정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족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은 이 조항에 규정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고 이 조항에 규정해 보아야 아무 소용도 없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분쟁해결조항을 다듬없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이 경제의 벽을 허물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소송에 의한 건설분쟁의 해결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ADR에 의한 분쟁해결의 증가현상은 국제적인 추세이고 건설분야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FIDIC<sup>14)</sup>의 분쟁해결조항은

14) FIDIC(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은 1913년도에 설립된 단체로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조건을 발표하여 세계건설시장에서 그 적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단체임.

중재로 규정되어 있고 미국의 공공건설 계약에는 중재이전에 ADR의 하나인 DRB(Dispute Resolution Board)제도를 이용하여 공공건설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을 “중재”로 규정하여 건설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계약문서에 분쟁해결방법으로 중재 하나만을 규정할 수 없다면 분쟁해결방법을 열거하되 일방의 선택에 상대방이 구속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조항을 다툼없는 조항으로 명료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 2. 중재판정의 집행제도 개선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중재판정의 확정판결력을 인정하면서도 제37조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갖는 효력중 유일하게 집행력이 없다<sup>15)</sup>.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사에 의하면 <표 9>,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2003년도에 처리된 중재사건중 신청인의 청구금액을 인용한 중재판정 사건 175건중 조사가 가능한 166건의 중재판정 이행조사 결과 강제집행을 했거나 강제집행을 진행, 준비중인 사건이 24건으로 전체사건의 14.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관여 형태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 사법기관이 아닌 사인의 판정에 대하여 국가가 그 판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집행을 허락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 사인의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15) 문장록, 전제논문, p.4.

일을 수궁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력을 갖고 있는 중재판정에 대하여 다른 일반 소송사건과 동일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집행소송에서 끝까지 다투다면 중재판정에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판결력이 있는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3심까지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커다란 제도상의 문제이고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건설중재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집행제도를 개선하여 독일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중재판정의 집행을 법원의 집행판결 대신 법원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은 단심에 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중재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제고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재는 곧 중재인이라고 한다. 중재제도가 분쟁의 해결절차로서 역할을 다하고 시장에서 환영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전문가(중재인)가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정하게 판정하므로써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중재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중재규칙 제19조(중재인의 자격)는 중재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 및 중재규칙 제25조(중재인의 부적격 고지)는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그런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재인이 기피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재인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런 제도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매 중재사건의 중재판정부 구성시마다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인 후보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고 해당 분쟁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중재인에 대하여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시킬 만한 사유가 없고 당사자와 경제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어느 당사자에게 편파되거나 불공평한 일이 없도록 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정하겠다’는 내용의 중재인취임수락서를 받아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중재인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중재사건의 응답자중 75.5%, 건설중재사건의 76.2%가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평가했고 전체 사건의 91.8%, 건설중재사건의 90.5%가 중재절차에 있어서 보통 이상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불공정했다고 평가한 나머지 약 10%의 당사자들도 중재절차가 공정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중재판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 IV. 결 론

중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내려져야 하고 이 중재판정을 용이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재는 법원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중재합의는 중재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건설계약에 주로 이용되는 공사

계약일반조건의 분쟁해결조항(중재합의)은 선택적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조항의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의 엇갈린 판결과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건설중재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중재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건설중재의 출발점이 되는 현행의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을 다툼없는 조항으로 명확하게 개정하지 않는 한 건설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분쟁은 건설계약의 특성상 ADR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고 ADR(특히 중재제도)에 의한 건설분쟁의 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소송에 의한 건설분쟁의 해결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의 국경을 허물고 지구촌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분쟁의 해결방법도 국제적인 룰에 따라가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건설계약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분쟁해결조항을 다툼없는 명확한 중재합의조항으로 개정하고 그 토대위에서 개관적이고 공정한 중재판정이 신속하게 내려지고 중재판정이 용이하게 집행된다면 건설중재는 활성화될 것이다. 건설중재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건설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경배, 조정합의 성립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1.
- 김명기, 선택적 중재합의에 관한 판례의 연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3. 가을/ 제309호.
- 김연호, 정부건설공사계약 중재조항의 재해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1. 겨울/ 제302호.
- 남진권,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문원출판, 2002.
- 두성규, 중재판정사례로 본 건설클레임의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3.
- 목영준, 중재에 대한 법원의 관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0. 봄/ 제295호.
- 문장록, 중재판정의 집행력에 대하여, 2004년도 제2차 건설중재인포럼, 대한상사중재원, 2004.
- 서정일, 국제상사중재법론, 두남, 2003.
- 임채홍, 공사계약일반조건상의 중재관련조항은 유효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2. 겨울/ 제306호.
- 정영환, 단계적, 선택적 분쟁해결조항의 연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3. 여름/ 제308호.
- 채완병,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판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2002. 가을/ 제305호.
- 대한건설협회, FIDIC 건설공사계약조건, 2004.
- 대한상사중재원, 상사분쟁과 중재절차 해설, 2003.
- , 상사중재30년사, 1996.
- 한국 중재법(1999.12.31.개정, 법률 제6083호).

대한 각중재원 중재규칙(2000.4.27.개정, 대법원승인).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ADR A Practice Guide To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94.

General Conditions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AIA Document A201.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ICC,1997.

## ABSTRACT

### **The Curr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and Suggestions to Increase its Use in Korea**

**Wan-Byung Chae**

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Key words:** construction arbitration,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